



200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『환경제도』

〈편집부〉

1.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

환경부 수생태보전과 (☎ 02-2110-6844)

- '09년 7월 1일부터 낙동강수계에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

[신·구 대비표]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- 단지조성면적150만㎡이상,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1일 200톤이상, 폐수배출량 1일 5,000톤이상인 산업단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- 단지조성면적150만㎡이상,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1일 200톤이상, 폐수배출량 1일 5,000톤 이상, 유해화학물질의 연간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 1평방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인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	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'09.7.1)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(02-2110-684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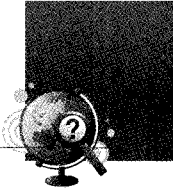
2.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

환경부 자연자원과 (☎ 02-2110-6757)

- '09년 6월 1일부터 도시주변에서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.

[신·구 대비표]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유해 야생동물 추가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, 까치, 여치, 직박구리, 까마귀, 갈까마귀, 떼까마귀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·림·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, 멧비둘기, 고라니, 멧돼지, 청설모, 두더지, 쥐류 및 오리류 (오리류 중 원앙이, 원앙사촌, 흑부리오리, 황오리, 알락시오리, 호사비오리, 뽕시오리,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)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구조물에 피해를 주거나,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(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) 	<유해야생동물 추가 : 1종> •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(糞便)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	야생동·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(환경부령 제332호, '09.6.1)

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계 부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·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(멸종위기생동물은 제외한다) •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•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		환경부 자연자원과 (02-2110-6757)

3.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·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 (☎ 02-2110-6835)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정(07.10.1)에 따라 정화시설의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된다
- 2009년 9월 28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중 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(기타지역)과 신고대상 배출시설(특정지역)의 총 질소와 총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.

[신·구 대비표]

	구 분		종 전		달라지는 내용		관련 법규(시행일)
			T-N	T-P	T-N	T-P	관계 부서
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	허가농가	특정지역	260	50	260	50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
		기타지역			850	200	환경부 물환경정책과 (02-2110-6835)
	신고농가	특정지역			850	200	
		기타지역	--	--	--	--	

4. 폐석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신설

환경부 자원재활용과 (☎ 02-2110-6955)

- '09년 7월부터 폐석재를 골재생산업체가 골재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「폐기물관리법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.

[신·구 대비표]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	<신 설>	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폐석재를 골재의 원료로 재활용 ☎ http://www.me.go.kr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'09.7.1)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(02-2110-6955)



5.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

환경부 자원재활용과 (☎ 02-2110-6955)

- '09년 7월부터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를 제한하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.

[신·구 대비표]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제한	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,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	철도 폐침목을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, 선박제조시설의 받침용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☎ http://www.me.go.kr 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'09.7.1)
			환경부 자원재활용과 (02-2110-6955)

6. 비성형 고품연료제품(RDF)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신설

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(☎ 02-2110-7726)

- '09년 11월부터 비성형 고품연료제품(RDF)에 대한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신설 등을 골자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.

[신·구 대비표]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비성형 고품연료제품(RDF) 품질·등급기준 마련 및 관리방안 신설	〈신 설〉	비성형 고품연료제품(RDF) 품질·등급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☎ http://www.me.go.kr 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'09.11.1 예정)
			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(02-2110-77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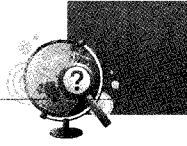
7.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도입 시행

환경부 물산업지원팀 (☎ 02-2110-7687)

- '09년 6월 30일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도입 시행한다.

[신·구 대비표]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도입		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함. * http://www.me.go.kr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'09.6.30)
			환경부 물산업지원팀 (02-2110-7687)



8.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적용

환경부 수도정책과 (☎ 02-2110-6871)

- '09년 7월부터 정수시설 규모가 1일 5천톤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가 의무화된다.

- 2009년 1월부터 정수시설 규모가 1일 5만톤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화가 적용되었으나, 금번 7월부터는 시설규모가 1일 5,000톤 이상인 시설에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 배치가 시행된다.

[신 · 구 대비표]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	정수시설 용량 50만톤/일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※ 2009. 1. 1부터 시행	정수시설 용량 5천톤/일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※ 2009. 7. 1부터 시행	수도법 시행령 제34조 [별표 2]
			환경부 수도정책과 (02-2110-6871)

9.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한시적 유예

환경부 대기관리과 (☎ 02-2110-7917)

- '09년도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 회수설비 설치기한을 한시적으로 6개월간 설치를 유예할 예정이다.

[신 · 구 대비표]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(시행일)
			관계 부서
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한시적 유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간 판매량이 1천^m이상 2천^m미만 : '09. 12. 31일까지 설치 • 천장형 주유시설 : '09. 6. 30일까지 설치 • 회수설비 설치기한 설정 기준 : 2006년도 연간 판매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간 판매량이 1천^m이상 2천^m미만 : '10. 6. 30일까지 설치 • 천장형 주유시설 : '09. 12. 31일까지 설치 • 회수설비 설치기한 설정 기준 : 전년도 연간 판매량 ☎ http://www.me.go.kr 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('09.6.30 예정)
			환경부 대기관리과 (02-2110-7917)